

1. 개정이유

-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

다.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교육시설의 면적기준(100 제곱미터 이상),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 양성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될 내용

마.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록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등록증 및 발급대장의 서식

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변경신고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사.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운영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원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지원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아. 우수사업자 인증기준과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인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인증표시, 인증을 위한 기준, 수수료의 납부,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발급대장의 서식 등

자.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인증·인정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인증·인정서의 서식 및 재발급 등

차. 인증·인정의 표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인증·인정 표지 기준 및 표시방법

타.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연장신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연장 절차 등

카.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타당성 조사(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타당성 조사의 세부 기준, 수수료의 납부 등

파. 원산지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원산지 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의 표시 적정성 조사, 시료 수거 등

하.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거.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법에서 정한 석재사업자 지원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 · 방법 ·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

*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석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 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전통석재 전시 · 홍보 시설 설치 · 운영 지원, 석재사업자 및 석재산업

진흥지구 지원(보조 · 융자, 컨설팅, 기술지원 등)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내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세부사업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문인력 교육훈련 계획)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작성하는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비 산출내역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재채취업

가.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설·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석재가공업

가. 석재가공공장의 등록사항 또는 작업공간을 확보한 증빙서류

나. 상시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시설·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시설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의 변경신고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증
2. 변경사항 또는 양도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시·홍보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전시·홍보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의 세부 설명서(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 명세서(시설을 보유한 경우) 또는 개략 설계도서
4. 전시·홍보시설 설치·운영 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연간 예산 수입·지출계획서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증
2. 사업계획 및 사업현황
3.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④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품질
2. 석재 또는 석재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기계·장비의 현대화 정도
3. 최근 2년 간의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생산 및 공급 실적
4. 사업장 안전의 확보와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자 등 전문인력 확보 정도
- ⑥ 법 제15조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석재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서(영 별표 4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신청품목의 생산 경위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생산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청품목의 사진 파일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보유한 전통 석공예 기법과 보유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세부설명서(영 별표 4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영 별표 4 제2호 가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진(3.5cm×4.5cm) 2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영 제15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이하 “인증서·인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한 후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정서 원본(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진(3.5cm×4.5cm) 2매(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인증 또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인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을 받은 자가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석재제품·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정서 원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

다)를 받으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영 제17조의 석재산업 진흥지구 요건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현황

②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정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임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과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8조제3항 관련)

표시방법	인증표시
색상으로 도안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 비고

1.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인증된 우수사업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해당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및 이용하는 차량, 시설, 안내책자, 명함, 신문 광고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절한 크기로 제작·활용할 수 있다.
- 3.도형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국문은 1.55 x W 비율, 영문은 1.65 x W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5 x W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의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윤고딕300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영문의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Noto Sans CJK KR폰트를 사용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흰색 또는 배경색이 보이도록 한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석재우수사업자인증”, “Stone business of excellence” 은 상단의 “STONE” 글자와 동일한 흰색 또는 배경색(복잡하지 않은)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파란색 C100+M86+Y12+K0, 검정C0+M0+Y0+K100으로 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석재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석재 사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석재나 그 가공품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지리적 표시의 방법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 표시 (제10조제1항 관련)

1.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국문은 1.55 x W 비율, 영문은 1.65 x W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5 x W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의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윤고딕300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영문의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Noto Sans CJK KR폰트를 사용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갈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흰색 또는 배경색이 보이도록 한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전통석재제품인증”, “Traditional (Korean) stone products” 은 상단의 “STONE” 글자와 동일한 흰색 또는 배경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짙은 황토C44+M76+Y83+K70, 검정C0+M0+Y0+K100으로 한다.
-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제품 또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표시 (제10조제1항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국문은 1.55 x W 비율, 영문은 1.65 x W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5 x W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의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윤고딕300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영문의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Noto Sans CJK KR폰트를 사용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흰색 또는 배경색(복잡하지 않은)이 보이도록 한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전통석재제품 명인인증”, “Master of traditional (Korean) stone products” 은 상단의 “STONE” 글자와 동일한 흰색 또는 배경색(복잡하지 않은)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8+M42+Y57+K45, 검정C0+M0+Y0+K100으로 한다.
-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제품 또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지정 필요성	1) 석재산업 발전 및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재사업자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선정 여부 2) 석재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분석 현지조사
나. 적합성	지정대상지 특성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상호 연계성 및 정합성 2) 육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석재산업 분석	1)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 등 산업 현황 및 석재사업자 간 업종별 상호 연계성 2)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요 및 전망 3)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활동 및 전통 석재제품 생산 현황 4)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과의 연계성	자료분석 현지조사
다. 경제성	경제성 분석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 또는 인근 지역 내 석재의 품질·매장량, 지리적 고유 특성, 특정산업 수요 등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자료분석 현지조사
라. 환경성	환경피해 우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 대책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2) 석재채취 후 복구 대책 등 토지활용 계획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재해발생 우려	각종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방안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원산지의 표시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국산 원석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원석을 생산·채취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2. 수입 원석과 가공품 및 반입 원석과 가공품
가. 수입 원석과 가공품(이하 "수입석재"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원석과 가공품(이하 "반입석재"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다.
3. 가공품(수입석재 또는 반입석재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석의 원산지(그 원석을 생산·채취한 지역의 국명)와, 가공지(대한민국 또는 가공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를 함께 표시한다.
나. 사용된 원석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의 표시방법 (제13조제2항 관련)

1. 적용대상

- 가. 규칙 별표4 제1호에 따른 국산 원석
- 나. 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입 원석과 가공품 및 반입 원석과 가공품
- 다. 규칙 별표4 제3호에 따른 가공품

2. 표시방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위치

- 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 나) 석공예품등 제품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밑면(바닥)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15포인트 이상. 다만, 1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글자색: 현품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소인·날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cm²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cm² 이상 3,000cm²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cm²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현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다.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다음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풋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라. 판매 제공 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판매 전 견적서, 제안서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판매 후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 사 → 지 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제 호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Γ_{TE}
 Γ_{HO}
 Γ_{LO}

산림청장

직인

(앞쪽)

1. 등록번호 : - (연도표시 - 일련번호)
2. 업종 :
3. 상호(법인명) :
4. 성명(대표자) :
5. 사무소소재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
은
기

(서명 또는 인)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호
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장 등) (시장 등) (시장 등) (시장 등)

(뒤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앞쪽)

석재가공업 등록증

1. 등록번호 : - (연도표시 - 일련번호)

2. 업종 :

3. 상호(법인명) :

4.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5. 사무소소재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등록취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2. 19.>

(앞 면)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2. 기술인력 보유현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유자격	경력	비고
3. 확인된 석재채취 허가 또는 신고					
구분	채취지역	기간	채취계획량	비고	
4. 변경사항 신고내용					
변경항목	변경일시	변경전	변경후	비고	
5.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일시	근거	조치결과	비고	

석재가공업 등록대장				기록자	담당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한글		
자본금 또는 자산			한자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1. 석재가공업 공장 또는 작업장 현황					
소재지	등록번호	업종	공장부지면적(㎡)	주요생산물	
2. 제조시설 보유현황					
명칭	수량	시설면적(㎡)	보유구분	비고	
3. 상시근로자 보유현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유자격	경력	비고
4. 변경사항 신고내용					
변경항목	변경일시	변경전	변경후	비고	
5.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일시	근거	조치결과	비고	

[] 석재채취업 [] 등록사항변경
[] 석재가공업 [] 양도 ·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사항 신고내용

변경항목	변경연월일	변경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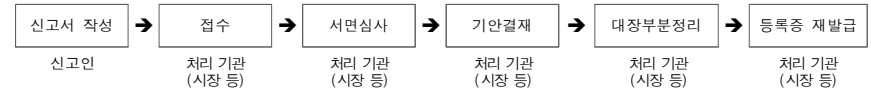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 등록증 2. 변경사항 또는 양도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전시하고자 하는 전통 석재제품 등:
	설치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용자: 보조:)
	운영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용자: 보조:)
	신청금액(보조): 백만원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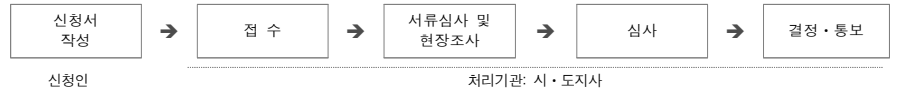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제품 전시·홍보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시·홍보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1부 2. 전시·홍보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의 세부설명서 1부 3. 시설 명세서(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개략 설계도서 1부 4. 전시·홍보시설 설치·운영 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6. 전시·홍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예산 수입·지출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현황	석재사업 구분: [] 석재채취업 [] 석재가공업		
	석재·석재제품의 종류:		
	기술인력 현황:		
	시설·기계·장비 현황:		
자본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증 1부 2. 사업계획 및 사업현황 1부 3.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심사	→	결정·통보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제 호

석재채취 우수사업자 인증서

- 상 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유효기간:

위 업체는 석재채취 기술이 우수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우수사업자임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제 호

석재가공 우수사업자 인증서

- 상 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유효기간:

위 업체는 석재가공 기술이 우수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우수사업자임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120g/㎡]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2. 19.>

전통 석재제품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신청품목 내용	신청품목명	용도	
	전통석공예 방법		
	생산에 참여하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 성명·인정번호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자료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서(영 별표 4의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청품목의 생산 경위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생산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청품목의 사진 파일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심사	→	결정·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보유자격, 수상내역, 석공예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	보유기능명		
	전통석공예 방법		
	품목	용도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자료	1. 견본품 2. 보유한 전통 석공예 기법과 보유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세부 설명서 1부(영 별표4의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영 별표4 제2호 가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진(3.5cm×4.5cm) 2매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심사
			→	결정·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 인증번호: 제 호
- 생산에 참여하는 명인 : 제 호
- 생신기관: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증 품목 및 내용: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 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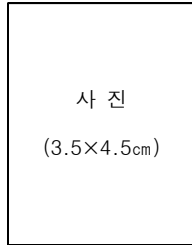
산림청장

직인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

1. 인정번호: 제 호
2. 성 명:
3. 생년월일:
4. 주 소:
5. 인정 품목 또는 기능: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120g/㎡]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인증 · 인정 개요	인증 · 인정 번호		
		인증 · 인정 품목 또는 기능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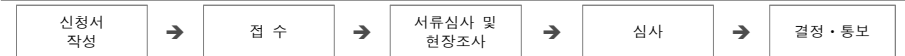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1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진(3.5cm×4.5cm) 2매(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 재발급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1. 2. 19.>

[] 전통 석재제품 인증

[]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인증·인정 개요	인증·인정 번호
		인증·인정 품목 또는 기능
	연장 사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인증 또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1부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심사

→

결정·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1. 2. 19.>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	-----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담당부서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필지		지정대상 면적	ha
---------------------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1부 2.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영 제17조의 석재산업 진흥지구 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현황 1부	수수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확인

→

최종검토

→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임업진흥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